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2년 3월 9일

나. 청 원 자 : 55명(광평동 172-3번지 이성수외 54)

다. 회부일자 : 2012년 3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3월 20일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소개의원 : 김 정 곤 의원

나. 청원내용

-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 외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1978. 12. 21일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된 후, 33년이 경과 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기관 및 구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어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설부지의 지정 해제를 요구.

3. 참고사항

○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결정 현황

- '78.12.21 :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79,149m²)
(경상북도 고시 제276호)
- '87. 2. 7 : 도시계획시설 변경(확장) 결정
[79,149m² → 236,174m²(증 157,025m²)]

○ 세부시설 결정내용

용 도 별	면 적(m ²)	비 고
총 계	236,174	
주 경 기 장	36,000	시공완료
실내체육관	7,800	“
보조경기장	23,000	시공중 (‘12년 준공)
주 차 장	18,000	일부시공
도 로	37,000	“
녹지 및 기타	75,874	“
야 구 장	24,600	미시공
실내수영장	1,200	“
정 구 장	7,200	“
배 구 장	5,500	“

○ 시설부지 해제 민원제기

- '97. 3. 26. - 구미시 다수민원 제기(토지 소유자 이성수와 38명)
- '00. 8. 23. - 고충민원제기(청와대 비서실)
- '00. 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기
- '04. 3. 29. - 구미시의회 청원(제4대)
- '11. 5. 27.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4.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희 철

- 본 건은 구미시 광평동 172-3번지 궁전빌라 304호 이성수와 54명으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시설부지 해제 요청」 청원의 건으로서,
-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와 59필지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978.12.21. 고시 제276호로,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한 후, 야구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미집행된 야구장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및 그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부지 236,174㎡중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차장, 도로, 녹지 및 기타 시설은 시공완료 또는 일부시공 중이며, 그 외 청원인들의 소유 부지에 야구장, 실내수영장, 정구장, 배구장 등 약 66,000㎡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합체육시설 계획이나, 보상계획이 없는 실정임.

- 그리고, 본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는 전체결정고시 면적 중 약 70%가 이미 집행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6.30일까지) 적용 대상은 아님.
- 따라서, 청원인들의 장기적으로 미조성된 체육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12년 구미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사업의 필요성, 주변환경, 접근성 등 입지여건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므로,
-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附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의견서 채택

붙 임 : 의견서 1부.